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 제24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」 및 「동법시행령 제36조」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대상자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기간	세대주 성명	공고사유
1	박민재	2007. 5. 08.	2024. 6. 1.~ 2025. 5. 31.	박건*	폐문부재
2	이상호	2007. 5. 14.	2024. 6. 1.~ 2025. 5. 31.	이덕*	폐문부재
3	이찬민	2007. 5. 11.	2024. 6. 1.~ 2025. 5. 31.	이계*	폐문부재
4	문정일	2007. 5. 08.	2024. 6. 1.~ 2025. 5. 31.	이선*	폐문부재
5	유청운	2007. 5. 18.	2024. 6. 1.~ 2025. 5. 31.	유현*	폐문부재
6	지상훈	2007. 5. 25.	2024. 6. 1.~ 2025. 5. 31.	지영*	폐문부재
7	손요원	2007. 5. 26.	2024. 6. 1.~ 2025. 5. 31.	문성*	폐문부재
8	최조원	2007. 5. 29.	2024. 6. 1.~ 2025. 5. 31.	최상*	폐문부재
9	한정환	2007. 5. 03.	2024. 6. 1.~ 2025. 5. 31.	한상*	폐문부재
10	오지민	2007. 5. 04.	2024. 6. 1.~ 2025. 5. 31.	오재*	폐문부재
11	김영선	2007. 5. 23.	2024. 6. 1.~ 2025. 5. 31.	김재*	폐문부재
12	장서현	2007. 5. 10.	2024. 6. 1.~ 2025. 5. 31.	장현*	폐문부재
13	김광영	2007. 5. 18.	2024. 6. 1.~ 2025. 5. 31.	김명*	폐문부재
14	김의채	2007. 5. 25.	2024. 6. 1.~ 2025. 5. 31.	김용*	폐문부재

※ 위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담당자 : 정경호 문의전화 : 031-5189-7216)

2024년 5월 16일

남 양 읍

